

「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장세구 의원

2. 찬 성 자: 김낙관 의원 외 6인

3. 제안이유

- 2025년 6월 행정안전부 「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」에 따라 상품권 발행 권면 금액 추가 및 개인 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상품권 유통량 증가를 통한 관내 소비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

4. 주요내용

- 상품권 발행 권면 금액 추가 등(안 제5조)
- 할인율 조정 및 개인 구매 한도액 상향 조정 등(안 제15조제5항, 제6항)
-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(안 제2조, 제26조)

5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15조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지류형 구미사랑상품권의 권면 금액에 ‘2천원권’을 추가하고 개인 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(100만원→200만원)하고자 발의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5조제4항에 따라 지류형 상품권 중 2천원권 상품권을 신설 하여 지역 내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- 또한, 「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」 개정사항(’25. 6., 행정안전부)을 반영하여 개인 구매 한도를 월 200만원까지 상향함으로써, 상품권 구매 수요가 높은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증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이번 개정안에 구매 한도 상향은 반영되었으나, 관련 부서에서는 실제 조례 적용시 시민들의 구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함께 적정한 구매 금액 한도와 할인율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